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5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진선미・이기헌・문정복

김영호 · 이광희 · 부승찬

송재봉・조승래・한병도

임오경・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법률에서 '과'와 '학과'를 혼용함에 따라 교육대학 등의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의 경우 '학과'라는 표 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학교 내에서 '과'와 '학과'가 혼재하는 경 우가 다수 있어 혼동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과' 단위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 동을 줄이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0조의2제4항, 제51조의2 및 제54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하는 교육과"를 "하는 학과"로, ""교육과""을 ""교육학과""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를 "교육학과"로 한다.

제50조의2제4항 중 "과의"를 "학과의"로 한다.

제51조의2 중 "과가"를 "학과가"로 한다.

제54조의2제4항 중 "과의"를 "학과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목적) ①・② (생 략)	제41조(목적)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	③
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u>하는 교육과</u> (이하	<u>하는 학과</u> <u>"교육</u>
<u>"교육과"</u> 라 한다)를 둘 수 있	학과"
다.	
제44조(목표) 교육대학 • 사범대학	제44조(목표)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u>교육과</u>	교육학과
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재학생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생 략)	학위수여)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4
령으로 정하는 <u>과의</u> 전공심화	<u>학과의</u>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	
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 (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u>과</u> <u>가</u>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 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과의</u> 전공심화 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 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ठ्रो-
— 과가
<u>.</u>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 ③ (현행과 같
$\frac{\Diamond}{\Box}$)
4)
<u>(4)</u>
(4) <u>학과의</u>